

특 허 협 력 조 약  
(PATENT COOPERATION TREATY)

발신: 수리관청

PCT

수신:  
김종해  
대한민국 10129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인향로 16 101동 701호

우선권주장에 관한 통지서

(PCT 규칙 26bis.1 및 26bis.2;  
PCT 시행세칙 302 및 314)

발송일 (일/월/년) 2018년 09월 21일 (21.09.2018)

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 
SOLARCELL

중요통지사항

국제출원번호  
PCT/KR2018/007699

국제출원일 (일/월/년) 2018년 07월 06일 (06.07.2018)

출원인  
김종해 등

이 국제출원의 우선권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.

1.  우선권주장의 보정. 2018년 09월 19일 (19.09.2018) 자로 접수된 출원인의 통지서에 따라서 아래의 우선권주장은 아래와 같이 정정되었습니다: KR 2018년 03월 20일 (20.03.2018)10-2018-0031923

비록 선출원번호가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,  
 비록 우선권주장의 아래 기재내용이 이에 상응하는 우선권서류상의 기재내용과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:  
 비록 국제출원일이 우선권기간(priority period) 만료 후이나, 동 만료일부터 2월 이내임에도 불구하고

2.  우선권주장의 추가. \_\_\_\_\_ 자로 접수된 출원인의 통지서에 따라서 아래의 우선권주장이 추가되었습니다.

비록 선출원번호가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,  
 비록 우선권주장의 다음 기재내용이 이에 상응하는 우선권서류상의 기재내용과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:  
 비록 국제출원일이 우선권기간(priority period) 만료 후이나, 동 만료일부터 2월 이내임에도 불구하고

3.  아래의 사유로 해당 우선권주장은 무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 (규칙 26조의 2.2(b)).

규칙 26조의 2.1(a)의 규정에 따른 기간 만료시점에, 출원인으로부터 서식 PCT/RO/110에 통지된 바와 같이 규칙 4.10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우선권주장을 보정하는 통지서가 수리관청에 접수되지 아니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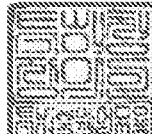
출원인의 통지서가 규칙 26조의 1(a)의 규정에 따른 기간 만료 후에 접수되었습니다. 따라서 우선권주장은 규칙 4.10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보정될 수 없었습니다.

출원인의 통지서가 규칙 4.10의 규정에 따른 요건에 충족되도록 보정되지 못하였습니다.

출원인은 국제공개를 위한 기술적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우선권주장에 관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으며, 국제사무국은 동 정보를 국제출원과 함께 공개할 것입니다(규칙 26조의 2.2(d)).

수리관청명칭 및 우편주소  
대한민국 특허청  
(35208)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,  
정부대전청사  
팩스번호: +82 42 472 3473

특허청장  
전화번호 82-42-481-8755



4.  상기 1. 및/또는 2.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보정 및/또는 추가, 또는 상기 3.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무효간주의 결과 우선일은 아래와 같습니다.  
2018년 03월 20일 (20.03.2018)

5.  우선권주장은 출원인이 제출한 서면이 \_\_\_\_\_, 즉, 규칙 26조의2.1(a)의 규정에 따른 기간 만료 후에 접수되었기 때문에 보정/추가될 수 없습니다. 다만, 출원인이 제출한 서면이 보정에 관련되는 경우, 규칙 26조의2.2(c)(i)부터 (iii)의 규정에 따라 출원서 제6기제란에 표시된 우선권주장은 무효로 간주되지 않을 것입니다.

출원인은, 수수료납부를 조건으로, 우선일로부터 30월 만료 전에 동 사안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국제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. 규칙 26조의2.2(e) 및 PCT 출원인안내 부록 B2(1B) 참조.

6.  2 이상의 우선권주장이 행하여진 경우에는, 위 항(들)은 아래의 우선권주장(들)과 관련됩니다:

7. 이 통지서의 사본은 국제사무국 (및  국제조사기관)에 송부되었습니다.